

##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5. 7. 28 규칙 제 797호  
일부개정 2016. 5. 27 규칙 제 846호  
일부개정 2017. 7. 18 규칙 제 877호  
일부개정 2024. 5. 10 규칙 제1131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 5. 10>

제2조(지정·인정 신청) 「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3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·인정받고자 하는 소유자·보유자(보유단체)(이하 “소유자 등”이라 한다)는 향토유산 지정·인정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5. 10>

제3조(지정서 등 교부)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지정서(별지 제2호서식) 또는 향토무형유산 보유자(보유단체) 인정서(별지 제3호서식)를 향토유산 소유자 등에게 교부한다. <개정 2024. 5. 10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 및 인정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부 내용을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 교부대장(별지 제4호서식)에 등록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7, 2024. 5. 10>

제4조(관리자 지정서)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자(단체) 지정서(별지 제5호서식)를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18, 2024. 5. 10>

제5조(점검)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대장(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)에 등록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연 2회(2월, 8월) 점검한 후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, 시장은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등록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5. 10>

제6조(경비보조 기준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20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보호·관리 또는 향토무형유산 공개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(10분의 7 이내)를 보조할 수 있다. 다만, 향토유산 활용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7, 2024. 5. 10>

제7조(보조금 교부신청) 제6조에 따라 경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7, 2024. 5. 10>

1. 향토문화유산의 공사, 수리 등의 보호·관리와 향토무형유산 공개행사 및 향토유산 활용사업을 위한 계획서(사진 포함)
2. 제1호에 따른 경비보조가 필요한 사유와 소요경비 및 자부담의 재원조달방안(자부담 협약서 포함)
3. 지정 또는 인정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준하는 향토유산의 기본 정보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8조 삭제 <2017. 7. 18>

#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5. 27 규칙 제84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7. 18 규칙 제87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5. 10 규칙 제113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용인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 중 “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(문화재)”를 “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증 사본(문화유산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문화재매매업”을 “문화유산매매업”으로 하고, “문화

재”는 “문화유산”으로 하며, 별지 제15호서식 중 “문화재지정”은 “문화유산지정”으로 한다.



(2쪽)

향토유산 지정·인정 신청서 작성요령

- ① 지정·인정 종류: 향토유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(지정), 향토무형유산(인정)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합니다.
- ② 유형/종목: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적습니다.  
(예) 목조건축물류/궁전, 석조건축물류/석탑
- ③ 명칭
  - 향토유산의 성격·유형·시대 등 그 대표성·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.
  -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향토유산이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부여합니다.
  - 다만, 국가유산 지정·인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련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.
- ④ 시대/연대
  - 석기시대, 청동기시대, 철기시대, 삼한시대, 삼국시대, 고구려, 백제, 신라, 가야, 발해, 통일신라, 고려, 조선, 대한제국기,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.
  - 다만, 건립·제작·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.
- ⑤ 소재지
  - 행정구역상의 도로명 주소를 적되, 소재지와 지번(地番)을 함께 적습니다.
  -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'외' 또는 '등'을 붙입니다.
- ⑥ 구조/형식/형태: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·형태 등을 적습니다. 향토무형유산 신청 시에는 생략 가능합니다.
- ⑦ 재료/재질: 향토문화유산을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. 향토무형유산 신청 시에는 생략 가능합니다.
- ⑧ 수량/규모/크기: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성격에 맞게 수량(동수, 기수 등), 규모(층수, 높이, 필지 수 등) 및 크기(면적 등)를 적습니다. 향토무형유산 신청 시에는 생략 가능합니다.
- ⑨ 현재 용도/기능: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,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. 향토무형유산 신청 시에는 생략 가능합니다.
- ⑩ 소유자(단체): 해당 향토문화유산(지정구역)의 소유자(단체)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, 향토무형유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자(보유단체)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.
- ⑪ 연혁/유래/특징
  - 향토유산의 연혁,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, 개조식(個條式)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.
  -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로 붙여야 합니다.
- ⑫ 관리자: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 지정·인정 계획 및 사유를 적습니다. 향토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.
- ⑬ 지정·인정 가치 및 근거기준
  - 향토유산의 지정·인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습니다.
    - 역사적·학술적·예술적·경관적·민속적·기술적 가치(중요한 시대정보, 대표성, 희소성, 상징성,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, 예술적·민속적·기술적 가치 등)
  -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로 붙여야 합니다.

### 향토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(예시)

향토문화유산이 건축물·구조물 등인 경우

(면적 : 제곱미터)

연번	명칭	시대/ 연대	구조/형식/ 형태	크기/ 수량	용도	소재지/ 지번	소유자		관리자		점유자	
	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주소
계												

향토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

(면적 : 제곱미터)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지정 면적	소유자		관리자		점유자	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주소
계											

297mm×210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

(뒤쪽)

소유자	주소	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	발급 또는 재발급 연·월·일	기록자
(변경사항)				
소유자	주소	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	변경 연·월·일	기록자
<p>※ 주의사항: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,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</li> <li>2. 향토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·주소가 바뀐 경우</li> </ol>				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4. 5. 10>

(앞쪽)

용인시 향토무형유산 제 호

## 향토무형유산 보유자(보유단체) 인정서

종 목 :  
성명(단체명) :  
생년월일(법인번호) :  
주 소 :

사진  
3.5cm×4.5cm  
※ 단체의 경우 생략

「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(단체)을 용인시 향토무형유산 제 호의 보유자(보유단체)로 인정합니다.

년 월 일

용 인 시 장  
직인

210mm×297mm[보호용지(1종) 120g/m<sup>2</sup>]

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4. 5. 10>

###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 교부대장

교부 번호	교부 일자	향토 유산 유형	향토 유산 명	지정· 인정 번호	지정· 인정 연·월·일	향토유산 지정·인정 내역	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	소유자/보유자		관리자	
								주소	성명 (생년.월.일/성별)	주소	성명

※ 주요 작성요령

- 향토유산 유형: 향토유산 유형을 구분하여 기재(예: 문화유산 또는 무형유산)
- 향토유산명: 향토유산 세부 명칭 기재(예: 000서적)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24. 5. 10>

제 호

### 향토문화유산 관리자(단체) 지정서

향토문화유산

- 문화유산명칭 :
- 지정번호 :
- 소재지 :

관리자

- 성명(단체명) :
- 주소 :
- 대표자 :

「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 사람(단체)을 향토문화유산 관리자(단체)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용인시장 직인

210mm×297mm[보호용지(1종)120g/m<sup>2</sup>]

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4. 5. 10>

(1쪽)

###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

문화유산 종류			지정번호		
명칭	한글			한자	
	영문				
분야			재료		
지정일			해제일		
구조			형식/형태		
작가 또는 제작자			규격/크기		
수량/면적			연대/시대		
소재지/ 보관 장소					
소유자	주소				
	성명 (생년월일/성별)		전화번호		
관리자 또는 관리단체	주소				
	성명		전화번호		
점유자	주소				
	성명		전화번호		
지정사유					
내용 (연혁, 유래, 전설 등)					
현황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

(3쪽)

용인시 향토유적 제 호 □□□□□			
위치도/실측도/사진			
제목		종류	
제목		종류	

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4. 5. 10>

(1쪽)

향토무형유산 관리대장			
무형유산 종류			지정번호
명칭	한글		한자
	영문		
지정일			해제일
종목 설명 및 지정 사유			
관리 연혁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

(3쪽)

용인시 향토무형유산 제 호 □□□□□			
사진			
제 목		종 류	
제 목		종 류	